

한다)해서 신청인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관청에 송부해야 한다.<신설 2018. 12. 31.>

[전문개정 2010. 12. 29.]

**제6조(사업 허가신청)** ① 법 제3조제1항 또는 제13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 1. 7., 2018. 12. 31.>

② 제1항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관할관청은 「전자 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)를 확인하여야 한다.<개정 2016. 1. 7., 2016. 6. 30., 2018. 12. 31.>

1. 주사무소 · 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 · 위치 및 규모를 적은 서류
2.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 · 종류 · 차명 · 형식 · 연식 및 최대 적재량을 적은 서류
3. 삭제<2015. 5. 26.>
4. 별지 제2호서식의 차고지 설치 확인서
5.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 · 양도증명서 또는 본인이 소유자로 기재된 「자동차등록규칙」 제4조 및 제27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자동차등록증이나 자동차제작증
6. 별지 제3호의2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임시허가증(법 제3조제13항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
- ③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중 화물을 집화 · 분류 · 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을 하는 자와 전 속 운송계약[「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」 제3조제3항에 따른 물류취약지역을 관할하는 시 · 도지사(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시장 ·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권한을 재위임한 경우에는 해당 시장 · 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)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전속이 아닌 운송계약을 포함한다]을 통해 화물의 집화 · 배송(이하 "집화등"이라 한다)만을 담당하고자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제2항의 첨부서류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.<신설 2012. 12. 6., 2013. 3. 23., 2019. 6. 28., 2024. 7. 10., 2025. 4. 29.>

[전문개정 2010. 12. 29.]

**제7조(허가절차)** ① 관할관청은 제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6조 제2항 각 호 및 제3항의 서류가 구비되었는지와 법 제3조제7항제1호에 따른 공급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예비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. <개정 2012. 12. 6., 2018. 12. 31.>

② 관할관청은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예비허가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.<개정 2011. 12. 31.>

1. 법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의 유무
2. 화물자동차의 등록 여부
3. 차고지 설치 여부 등 제13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
4. 법 제35조에 따른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(이하 "적재물배상보험등"이라 한다)의 가입 여부
5. 화물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화물운송 종사자격 보유 여부
- ③ 관할관청은 제2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법 제48조에 따른 협회(이하 "협회"라 한다)에 통지(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 허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- ④ 제3항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10. 12. 29.]

**제7조의2(임시허가 신청 등)** ① 법 제3조제12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임시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임시허가신청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 12. 31.>

② 제1항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임시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<개정 2024. 12. 18.>